
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제제안요구서(RFP)

목 차

0. [참고] 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전체 RFP 공통 적용사항	3
1.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	5
1. (RFP 1-1)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	5
2. (RFP 1-2)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	7
2.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	9
1. (RFP 2-1) 치매치료제 개발(임상1상 또는 임상2상)	9

□ **치매 기준**

- 치매는 사람의 정신(지적)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을 말하며, 어떤 사람의 일상 생활의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 치매라고 정의함, 원인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, 혈관성 치매, 파킨슨병, 루이소체 치매, 헌팅톤병, 크루츠펠트-제이아콘병, 픽병 등이 포함되고, 경도인지장애, 치매의 다른 원인들과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 (조발성치매, 전두엽치매, 알콜성치매), 기타치매 (유전성, 대사성, 염증성, 외상성, 가성치매 등) 등이 속함 (출처: 대한치매학회)

□ **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작성 시 필수확인 사항**

구분	내용
과제구성 공통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/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구성 가능하며,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과제 구성 불가 •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•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•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논문성과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야 하며, Review(종설) 논문은 성과 인정 제외 ○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 ○ 최종평가 시 연구내용과 관련 없는 성과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○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, 성과실적 계산을 위한 학문(질환) 영역별 journal 분류기준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전년도 기준의 IF 및 JCR을 활용 ○ 2개 이상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, 병렬 사사표기가 가능하며 성과 입력 시 각 과제가 논문에 기여한 기여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기여율 기입 필요 ○ 입력된 성과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성과로 인정하며 기여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 1/N으로 적용됨 ○ 논문 발표 시,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의 성과임을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하여야만 성과로 인정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문 표기: (국문)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(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, KDRC)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 번호(예시): RS-2025-12345678)” * 영문 표기: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Dementia Research Project through the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(KDRC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: RS-2025-12345678)” ※ 위의 과제번호는 예시로, 반드시 해당과제의 과제번호 확인 후 사사 필요 </div>
마일스톤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연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이후 최종 평가 결정을 하기 위한 핵심자료임.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
기초·임상연구 레지스트리 (TRR) 이용 및 기탁 관련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수집한 혈액·체액 샘플 및 환자 정보는 기초·임상 연구 레지스트리(TRR)의 운영계획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 내에 등록 및 기탁해야 함. 또한, 등록 기탁된 데이터 및 자료는 향후 치매관련 통합정보 및 서비스 플랫폼인 K-Dementia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에 연계 예정이므로 선정된 과제는 관련 내용을 연구계획서 내에 명시하여 IRB 승인을 득해야 함 ○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료, 데이터 등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에서 구축한 TRR-DPK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양이 가능함. 단, 분양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자체 시료/데이터 확보계획을 세우고, TRR 시료는 검증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연구자가 신청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해 분양심의를 거쳐 제공 예정

<p>인허가 및 임상시험 관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외 인허가 신청시 해당국가 및 규제기관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○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의 경우, 해당국가 규제기관(예,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, 미국 FDA)으로부터의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(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를 제출하여야 함
<p>기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신청 마감일까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사전선별 시 탈락됨 ○ 외부기술을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함 ○ 국제공동연구인 경우 국내 주관연구기관이 글로벌 상업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권리를 확보해야 함 ○ 국문이나 영문 이외의 자료는 공인된 기관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 ○ 과제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위해 사업단 주도의 프로그램 (워크숍, 정기세미나, 성과공유회, 간담회 등)에 참여해야 함 ○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실용화 성과가 창출될 경우, 중앙·광역치매센터,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할 수 있음 ○ 일반적인 평가 관련 사항은 ‘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’ 참고 ○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, ‘보건의료 R&D 성과관리 매뉴얼’에 따라 성과 검증을 진행함

RFP 1-1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

사업명	치매 극복연구개발사업		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부처 협업 패키지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대상	
제안요청서명	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				
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TRL* 단계 (시작~종료) <small>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</small>	의약품 TRL 2~3 바이오마커 BRL 2~4	기술료 납부대상	O

▶ 사업목적

- 기 발굴된 치매 발병 원인 및 기전 외, 새롭게 등장하는 치매 발병 위험요인 탐색 및 규명을 통한 효과적인 치매 예방·치료 전략 개발 지원
- 진단이나 치료제로의 연계 및 응용이 가능한 다양한 치매유형 분석 및 고도화 지원

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‘신청요건’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304백만원 이내/년 (228백만원)	3개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	① 분야별 IF 상위 20% 이내 논문 2건 또는 IF 상위 10% 이내 논문 1건 ② 신규 치매 위험요인 또는 기전 발굴 1건 이상 (TRL3* 달성) * BRL/TRL 자체평가 후 보고서 내 기재 요망, BRL/TRL 단계는 특기 사항 참고 ※ ①, ② 모두 달성하여야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양한 요인에 의한 치매 발병·악화·위험 기전 규명 및 치료 타겟 발굴 ○ 새로운 신경보호인자 및 보호기전 발굴 ○ 치매 병기에 따른 치매 유발인자의 변화와 병리 간 상관관계 규명 및 타겟 발굴 ○ 혁신적이며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치매 발병기전 규명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특기사항

- 창의적이고 새로운 연구 권장(기 선정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신규 위험요인 탐색/접근법 과제 권장)
 - 해당 과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의 신규 위험요인 발굴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지향함
 - 후보물질 도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“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규명” 과제에 지원할 것을 권고

▶ 일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, 평가를 통한 실적달성 여부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공고안내서 ‘[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’ 참고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서면· 발표 평가	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(65)	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(3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기술동향을 충실히 분석하였고, 기존 기전 연구와 비교하여 차별성 및 기술경쟁력이 있는가? - 선행연구 결과가 우수하고 신규 위험요인 발굴 가능성이 높은가?
		○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내용이 신규 치매 위험요인 또는 기전 발굴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?
		○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충실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계획과 마일스톤이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?
	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20)	○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기술역량 및 연구 수행 능력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관 연구 수행 경험 및 성과(논문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 -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실적인 확보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? - 미확보 또는 애로기술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는가?
		○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연구 추진체계/연구비 집행계획의 적합성 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내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? -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배분, 연구 추진 일정 등이 적절한가?
	3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	○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, 추후 임상학적 연구로 연계가 가능한가?
○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단 및 치료제 타겟으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개념 검증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웠는가? 		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1-2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

사업명	치매 극복연구개발사업		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부처 협업 패키지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대상	
제안요청서명	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				
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TRL*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의약품 TRL 3~4	기술료 납부대상	O

▶ 사업목적

- 다양한 치매원인 규명 및 병태생리학적 연관성에 기반하여 GLP 연계 가능한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발굴

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‘신청요건’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304백만원 이내/년 (228백만원)	3개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	① 신규 유효·선도물질 발굴 및 검증 (TRL4* 완료) * TRL 자체평가 후 보고서 내 기재 요망, TRL 단계는 특기사항 참고 ② 기술이전 1건 이상 ③ 분야별 IF 상위 20% 이내 논문 2건 또는 IF 상위 10% 이내 논문 1건 ※ ①, ②, ③ 모두 달성하여야 함	○ 치매 발병기전과 연관된 타겟을 표적으로 하는 근원적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특기사항

- 기 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들을 기반으로, 치매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 지향
 - 해당 과제는 후보물질 발굴 및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지향함
 - 기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는 “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” 과제에 지원할 것을 권고
- ※ 본 RFP에서는 Non-GLP 수준으로 in vivo에서의 안전성·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

▶ **일반사항**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
 - 최종 산출물의 프로파일(TPP, Target Product Profile) 및 기술성숙도(TRL)에 근거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, 평가를 통한 실적달성 여부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**선정평가 기준**

적용가점	공고안내서 '붙임 4'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
서면· 발표 평가	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(5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행연구 결과가 우수하고 기존 연구(또는 기술)와 비교하여 혁신성 및 기술경쟁력이 있는가? - 기존 임상분야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가?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연구기간동안 임상연계 가능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단계별 마일스톤 및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○ 연구개발과제 연구목표의 구체성 (3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roof of Concept(PoC)을 확인하는 계획이 명확한가? - Target Product Profile(TPP)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?
	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기술역량 및 연구 수행 능력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유관 연구 수행 경험 및 성과(논문, 특허 등),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? -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실적인 확보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? ○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연구 추진체계/연구비 집행계획의 적합성 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내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? -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배분, 집행계획 등이 적절한가?
	3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3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및 후속연구 연계 가능성 (2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시된 연구개발성과가 후속연구(비임상 수준)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가? - 연구개발책임자의 후속 연구개발 추진 의지 또는 타 기업과의 연계 연구계획이 있는가? -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? ○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허가 또는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? - 연구개발성과의 IP 확보 계획 및 사업화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2-1 치매치료제 개발

사업명	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		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부처 협업 패키지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대상	
제안요청서명	치매치료제 개발				
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TRL*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의약품 TRL 6~7	기술료 납부대상	O

▶ 사업목적

- 근원적인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

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기업이 반드시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(미참여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)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치매치료제 개발 (임상1상 또는 임상2상)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1,133.4백만원 이내/년 (850백만원)	1개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※ 해당 내역의 경우, 임상2상으로 지원하여도 상기 제시된 연구비에서 증액 불가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치매치료제 개발 (임상1상 또는 임상2상)	① 다음 단계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 완료* * 단, '임상 1a상 → 임상 1b상'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목표 달성으로 인정 하지 않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치매 발병기전과 연관된 타겟을 표적으로 하는 저분자 합성의약품, 항체치료제, 세포치료제, 유전자치료제, 줄기세포치료제, 생균치료제 등 증상완화제가 아닌 근원적 원인 조절치료제(DMT, Disease modifying therapy) 개발 ○ 경도인지장애, 초기 치매, 중등도 치매 등 특정 치매 병기에 따른 치료제 또는 전주기적 치매치료제 개발 ○ 기 개발된 근원적 치료제의 고도화(원인물질 제거 효율의 향상, 부작용의 감소 등)를 통해 Best in Class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 개발 ※ 기 개발된 근원적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전략 제시 필수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특기사항

- 임상 1상 과제의 경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서를, 임상 2상 과제의 경우 임상 2상 임상 시험계획(IND) 승인서를 확보한 경우, 혹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‘임상시험계획 승인서’를 제출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(승인서 혹은 서약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)
- ※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 시까지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가(단, 민간부담금은 집행 가능)하며, 6개월 이내 승인서 미제출 시 과제 지원이 중단됨
-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의 기준에 따름

기업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업부담연구개발비	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
* 기업부담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‘2. 공고안내서’ 참고

-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약물재창출(Drug repositioning) 연구는 제외
- 기 선정과제, 임상 진행 중인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
- 사업화 가능성, 시장 성공 가능성 및 IP 확보 전략 제시 필요

▶ 일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
 - 최종 산출물의 프로파일(TPP, Target Product Profile) 및 기술성숙도(TRL)에 근거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, 평가를 통한 실적달성 여부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공고안내서 ‘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’ 참고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
서면· 발표 평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연구개발과제의 혁신성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(6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의 혁신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행연구 결과가 우수하고 기존 연구(또는 기술)와 비교하여 혁신성 및 기술경쟁력이 있는가? - 기술이전을 받은 물질일 경우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? - 기존 임상분야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가? - 치매 원인을 조절하는 근원적 치료제인가?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(2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구목표(다음 단계 IND 승인)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마일스톤 및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 ○ 연구개발과제 연구목표의 구체성 (2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arget Product Profile(TPP)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? - Proof of Concept(PoC)이 명확하며, 단계별 PoC를 뒷받침하는 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는가? -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surrogate endpoint가 타당한가?

	<p>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20)</p>	<p>○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기술역량 및 연구 수행 능력 (1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유관 연구 경력, 전문성, 대표 실적 등을 지니고 있는가? -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? <p>○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연구 추진체계의 적합성 (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? - RFP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 관련 전문가(임상교수, 임상개발자 등) 등 협력체계가 충실히 구성되어 있는가?
	<p>3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20)</p>	<p>○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파급효과 (2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종료 후 예상되는 개발제품이 국내외 시장을 점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가? - 허가 또는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? - 사업화 추진체계 및 차별전략(현 치매치료제 파이프라인 분석)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 -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(원천IP 확보, FTO 등)가 되었는가?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